운전학원종합보험

□ 주요 보장내용

보장명		보험금 지급사유
기본계약	운전학원시설조항 - 시설배상책임	운전학원시설조항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운전학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
기본계약	운전학원시설조항 - 시설책임구내자동차손해	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운전학원 구내에서 운전학원구내수강자조항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이나 기능검정을 위하여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용 또는 기능검정용 구내자동차(이하 「구내자동차」라 합니다)를 운전 중 운전학원의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 기능시험교육 및 기능 검정을 위하여 운전중인 구내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

□ 보험료 예시

- 보험기간 : 1년
  보장내용 : 운전학원시설조항 - 시설배상책임, 구내자동차손해
  목적물 상세 : 전문학원 1,000㎡, 수강자수 12명

보장명		보험가입금액	영업보험료
기본계약	운전학원시설조항-시설배상책임(대인)	대인 1인당 1.6억원	222,720원
		대인 1사고당 2억원	
	운전학원시설조항-시설배상책임(대물)	대물 1사고당 2천만원	
	운전학원시설조항-시설책임구내자동차 손해	1사고당 7백만원	
	자기부담금 10만		
계			222,720원

※ 상기보험료는 요율변동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('25년1월 기준)

일반상품개발파트/이태희/64F96341

일반상품개발파트/이태희/64F96341